

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

금융투자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-3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유럽연합의 금융상품시장지침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 제2-24조제1항제4호가목 후단 중 “이 호”를 “이 호 및 제6호”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에 따른 자금운용 결과를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의 발행 및 자금운용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

가. 채권평가회사를 통한 기초자산의 검증·산출에 대한 사항

나.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(이하, 이 호에서 “투자자문업자등”이라 한다)와 확인하고 확인결과에 대해 내부통제부서와 파생상품업무책임자에게 매월 보고하는 것에 대한 사항

다. 기초자산의 산출방법, 투자자문업자등의 운용자산 선정기준 및 운용실적 등의 정보를 계약서에 기재하고 투자자에게 설명하는 것에 대한 사항

라.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운용종목, 운용성과, 투자자가 부담하는 비용, 기초자산의 산출결과, 투자현황 및 투자전략 등의 정보를 주기적으로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한 사항

제3-10조제1항 본문 중 “법 제33조에 따른 업무보고서의”를 “법 제32조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된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순자본비율은 가결산일 및 결산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에 포함한다.

제3-12조제5호 단서 중 “제2호에 따른 가산액”을 “제2호에 따른 가산액 및 제 3-14조제10호 및 제3-14조제10의2호에 따라 차감에서 제외되는 금액”으로 한다.

제3-12조제5호다목 전단 중 “일 것”을 “이고 5년 이내에 중도 상환되지 아니할 것”으로 하고, 후단 중 “잔존기간이 5년 미만이 되는 경우”를 “잔존기간(발행자가 중도상환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잔존기간은 차기 중도상환권 행사가능일 까지로 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이 5년 미만이 되는 경우”로 한다.

제3-13조제1항제6호 중 “일 것”을 “이고 5년 이내에 중도 상환되지 아니할 것”으로 한다.

제3-13조제2항제2호 중 “인수한 경우를 포함한다”를 “인수하였으나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”로 한다.

제3-13조제3항 전단 중 “순재산액의”를 “제3-12조제5호에 따른 가산액 및 제 3-14조제10호 및 제3-14조제10의2호에 따라 차감에서 제외되는 금액과 합하여 순재산액의”로 하고, 후단 중 “잔존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”를 “잔존기간(발행자가 중도상환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잔존기간은 차기 중도상환권 행사가능 일까지로 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이 5년 미만인 경우”로 한다.

제3-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-13조의2 (자본증권)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본증권은 제 3-14조제10의2호 단서에 따라 차감에서 제외된다.

1. 금융투자업자가 파산할 경우에 타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명시될 것

2. 금융투자업자가 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타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채권자의 상계권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약정이 있을 것
3. 원리금 상환으로 인하여 금융투자업자가 별표10의2 제3호 가목 또는 별표10의4 제3호 가목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상 상환시기가 도래하여도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한다는 약정이 있을 것
4. 만기 이전에 채권자의 임의에 의하여 금융투자업자가 상환하지 않는다는 약정이 있을 것
5. 자본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금융투자업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약정이 있을 것
6. 발행시 만기는 5년 이상이고 5년 이내에 중도 상환되지 아니할 것
7. 그 밖에 후순위차입의 본질을 해할 우려가 있는 약정이 없을 것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증권은 제3-11조제1항에 따른 영업용순자본의 가산항목에서 제외한다.

1. 타인과 상호간에 자금을 교차차입하는 등 금융투자업자의 실질적인 자금유입이 없는 경우
2. 다른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차입한 경우(공모발행시 다른 금융투자업자가 인수하였으나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)

③ 제3-14조제10의2호 단서에 따라 차감에서 제외되는 자본증권은 3-12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가산액 및 제3-14조제10호단서에 따라 차감에서 제외되는 금액과 합하여 순재산액의 50% 이내로 한다. 이 경우 잔존기간(발행자가 중도상환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잔존기간은 차기 중도상환권 행사가능일까지로 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이 5년 미만인 되는 경우 자본증권의 발행금액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금액에서 제외

하며 잔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전액을 차감한다.

1. 잔존기간 4년 이상 5년 미만 : 80%
2. 잔존기간 3년 이상 4년 미만 : 60%
3. 잔존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 : 40%
4. 잔존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: 20%

④ 금융투자업자가 자본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, 상환한 경우에는 관련내용을 즉시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3-14조제4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

차. 「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」에 따라 지정된 금융투자업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취급한 대출금

- (1) 영 제68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취급한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」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에 대한 대출금으로서 자기자본의 100분의 50 이내인 대출금
- (2) 신용위험 유발거래 전후 신용위험을 적절히 평가·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체계 및 사후관리체계를 구축·운영할 것
- (3) 내부통제체계 및 사후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·운영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당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을 운영할 것
- (4) 제3-24조의2제2항에 따른 리스크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준수할 것.
다만, 제3-24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신용공여 총 합계액을 산정함에 있어 (1)에 따른 신용공여액은 제외한다.

제3-14조제10호 단서 중 “순재산액의”를 “제3-12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가산액 및 제10의2호에 따라 차감에서 제외되는 금액과 합하여 순재산액의”로 한다.

제3-14조제10호다목 전단 중 “일 것”을 “이고 5년 이내에 중도 상환되지 아닐 것”으로 하고, 후단 중 “잔존기간이 5년 미만인 되는 경우”를 “잔존기간(발행자가 중도상환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잔존기간은 차기 중도상환권 행사가 가능까지로 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이 5년 미만인 되는 경우”로 한다.

제3-14조에 제10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의2. 자본증권 발행자금. 다만, 제3-13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제외한다.

제3-16조제1항제5호 중 “자본”을 “지분상품”으로 한다.

제3-23조제1항제1호 중 “기준일 전전월말”을 “기준일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한다”를 “하며,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단기금융업을 영위하는 경우 단기금융업에 대한 법정최소자기자본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다.”로 한다.

제3-35조제1항제2호 중 “투자예탁금”을 “투자자예탁금”으로 한다.

제3-66조제2항을 삭제한다.

제4-38조 제목 중 “투자예탁금”을 “투자자예탁금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제15조에 따른 순채무한도”를 “제19조에 따른 순이체한도”로 한다.

제4-63조제4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.

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가. 발행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 이내에 신용평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무보증사채를 집합투자재산으로 편입하는 경우

나. 「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」 제2-2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무보증사채를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으로 편입하는 경우

제5-5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장외파생상품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는 장외파생상품을 일반투자자와 매매한 경우 법 제166조의2제2항에 따라 월 1회 이상 장외파생상품의 평가내역이 포함된 거래평가서를 일반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8-9조제1항제2호 중 “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나 매도가능금융자산”을 “당기손익-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이나 기타포괄손익-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”으로 한다.

제9-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금융감독원장은 이 법, 「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인가·등록·승인 등(이하 이 항에서 “인가 등”이라 한다)의 심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각각의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(각각의 심사기간에서 제외하는 기간은 감안하지 아니한다)을 경과한 인가등의 심사 진행 상황 및 예상 심사 종료 시점을 금융위원회가 소집된 달에 마지막으로 개최되는 정례금융위원회에 매월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이 법 또는 「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인가등의 심사가 중단된 경우 예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법 제12조에 따른 인가(예비인가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): 인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

2. 법 제12조에 따른 인가(예비인가를 거친 경우): 인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
3. 법 제14조에 따른 예비인가: 인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
4. 법 제18조·제117조의4 또는 제249조의3에 따른 등록: 등록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
5. 법 제77조의2에 따른 지정: 지정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
6. 법 제360조에 따른 인가: 인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
7. 「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인가: 인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
8.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에 따른 대주주변경승인: 변경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
9.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인가: 각각의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

별표 9 종합금융업란 다음에 단기금융업란과 종합투자계좌업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그 밖의 경우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구 분		영업내용	위험값
단기금융업	⑬단기금융	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단기금융업무	18%
종합투자계좌업	⑭종합투자계좌	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종합투자계좌업무	24%
	⑮그 밖의 경우	그 밖에 구분이 곤란한 영업, 제3-10조제1항에 따른 연결대상회사의 영업	15%

별표 20 기본자본란 중 “금액 및 제8-9조제1항에 따른 대손준비금 제외”를 “금

액 제외”로 한다.

별표 20 보완자본란 중 “매도가능증권”을 “기타포괄손익-공정가치측정증권”으로 하고, 공제항목란 중 “매도가능증권”을 “기타포괄손익-공정가치측정증권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신종자본증권 등에 대한 자본인정요건 적용례) 제3-12조제5호다목, 제3-13조제1항제6호, 제3-13조제3항, 제3-13조의2, 제3-14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규정이 시행된 이 후 발행된 상환우선주, 후순위차입금 및 자본증권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인가 심사 경과 보고 적용례) 제9-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 후 접수되는 인가·등록·승인 심사 절차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-3조(해외 파생상품거래) 영 제5조 제6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”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.</p> <p>1.·2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1-3조(해외 파생상품거래)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유럽연합의 금융상품시장지침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</u></p>
<p>제2-24조(파생상품 영업 및 매매에 관한 내부통제) ①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파생상품(파생결합증권 및 법 제93조에서 정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영업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</p> <p>가. 파생결합증권(「상법」 제46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사채로서 법 제4조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권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호에서 같다)의 발행</p>	<p>제2-24조(파생상품 영업 및 매매에 관한 내부통제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 ----- -----</p> <p>가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이 호 및 제6호</u>-----</p>

을 통해 조달한 자금과 그 밖의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재산을 구분 관리(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운용 내역을 구분하여 기록·유지하는 것을 말한다)하는 것에 관한 사항

5. (생략)

<신설>

5. (현행과 같음)

6.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에 따른 자금운용 결과를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의 발행 및 자금운용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

가. 채권평가회사를 통한 기초자산의 검증·산출에 대한 사항

나.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(이하, 이 호에서 “투자자문업자등”이라 한다)와 확인하고 확인결과에 대해 내부통제부서와 파생상품업무책임자에게 매월 보고하는 것에 대한 사항

다. 기초자산의 산출방법, 투자자문업자등의 운용자산 선정기준 및 운용실적 등의 정보를 계약서에 기재하고 투자자에게 설명하는 것에 대한 사항

라.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의 운용종목, 운용 성과, 투자자가 부담하는 비용, 기초자산의 산출결과, 투자현황 및 투자전략 등의 정보를 주기적으로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한 사항

제3-10조(순자본비율 등 산정의 기본 원칙) ① 순자본비율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융투자업자의 자산, 부채, 자본은 법 제33조에 따른 업무보고서의 연결재무제표에 계상된 장부가액(평가성 충당금을 차감한 것)을 기준으로 한다. 다만, 연결대상 회사의 구체적인 범위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며, 연결 대상 회사가 없는 금융투자업자는 개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다.

② ~ ⑥ (생략)

<신설>

제3-12조(가산항목) 제3-11조제1항에 따른 가산항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등의 금액으로 한다.

1. ~ 4. (생략)

제3-10조(순자본비율 등 산정의 기본 원칙) ① -----

----- 법 제32조의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작성된 -----

② ~ ⑥ (현행과 같음)

⑦ 순자본비율은 가결산일 및 결산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에 포함한다.

제3-12조(가산항목) -----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부채로 분류되는 상환우선주 발행잔액. 다만,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며, 가산액은 제2호에 따른 가산액과 합하여 순재산액의 50% 이내로 한다.

가.·나. (생략)

다.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일 것. 이 경우 잔존기간이 5년 미만인 되는 경우 상환우선주 발행잔액에 다음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하며, 잔존기간이 1년 미만인 되는 경우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.

(1) ~ (4) (생략)

제3-13조(후순위차입금) ① 제3-12조 제2호에 따라 영업용순자본에 가산할 수 있는 후순위차입금은 다음

5. -----

----- 제2호에 따른 가산액 및 제3-14조제10호 및 제3-14조제10의2호에 따라 차감에서 제외되는 금액-----

-----.

가.·나. (현행과 같음)

다. -----
-----이고 5년 이내에 중도 상환되지 아니할 것. ----- 잔존기간(발행자가 중도상환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잔존기간은 차기 중도상환권 행사가능일까지로 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이 5년 미만인 되는 경우 -----

-----.

(1) ~ (4) (현행과 같음)

제3-13조(후순위차입금) ① -----

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
이어야 한다.

1. ~ 5. (생략)

6. 차입일로부터 원금상환일까지의
기간이 5년 이상일 것

7. (생략)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
하는 후순위차입금은 영업용순자본
에 가산할 수 없다.

1. (생략)

2. 다른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차입한
경우(공모발행시 다른 금융투자업
자가 인수한 경우를 포함한다)

③ 영업용순자본에 가산할 수 있는
후순위차입금 규모는 순재산액의
50% 이내로 한다. 잔존기간이 5년
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
이 연도별로 20%씩 가산규모를 축
소하며, 잔존기간이 1년 미만인 경
우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.

-----.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6. -----
-----이고 5년 이내에
중도 상환되지 아니할 것

7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

--- 인수하였으나 매출이 이루어
지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-

③ -----
----- 제3-12조
제5호에 따른 가산액 및 제3-14조
제10호 및 제3-14조제10의2호에 따
라 차감에서 제외되는 금액과 합하
여 순재산액의 -----.
잔존기간(발행자가 중도상환권을
보유하고 있는 경우 잔존기간은 차
기 중도상환권 행사가능일까지로
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이 5년
미만인 경우-----

1. ~ 4. (생략)

④ (생략)

<신설>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④ (현행과 같음)

제3-13조의2 (자본증권)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본증권은 제3-14조제10호의2 단서에 따라 차감에서 제외된다.

1. 금융투자업자가 파산할 경우에도 타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명시될 것

2. 금융투자업자가 파산 등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도 타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채권자의 상계권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약정이 있을 것

3. 원리금 상환으로 인하여 금융투자업자가 별표10의2 제3호가목 또는 별표10의4 제3호가목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상 상환시기가 도래하여도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한다는 약정이 있을 것

4. 만기 이전에 채권자의 임의에 의하여 금융투자업자가 상환하지 않는다는 약정이 있을 것

5. 자본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금

용투자업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약정이 있을 것

6. 발행시 만기는 5년 이상이고 5년 이내에 중도 상환되지 아니할 것

7. 그 밖에 후순위차입의 본질을 해할 우려가 있는 약정이 없을 것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증권은 제3-11조제1항에 따른 영업용순자본의 가산항목에서 제외한다.

1. 타인과 상호간에 자금을 교차차입하는 등 금융투자업자의 실질적인 자금유입이 없는 경우

2. 다른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차입한 경우(공모발행시 다른 금융투자업자가 인수하였으나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)

③ 제3-14조제10호의2 단서에 따라 차감에서 제외되는 자본증권은 제3-12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가산액 및 제3-14조제10호 단서에 따라 차감에서 제외되는 금액과 합하여 순재산액의 50% 이내로 한다. 이 경우 잔존기간(발행자가 중도상환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잔존기간은 차기 중도상환권 행사가능일까지로 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이 5년 미만인 되는 경우 자본증권의

발행금액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금액에서 제외하며 잔존기간이 1년 미만인 되는 경우 전액을 차감한다.

1. 잔존기간 4년 이상 5년 미만 : 80%

2. 잔존기간 3년 이상 4년 미만 : 60%

3. 잔존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 : 40%

4. 잔존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: 20%

④ 금융투자업자가 자본증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, 상환한 경우에는 관련내용을 즉시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3-14조(차감항목) 제3-11조제1항에 따른 차감항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등의 금액으로 한다.

1. ~ 3. (생략)
4. 대출채권(콜론, 환매조건부매수, 대출금, 매입대출채권, 사모사채, 제4-21조제1호다목에 따른 신용공여 및 이에 준하는 거래를 말한다) 중 담보가액(담보물의 종류,

제3-14조(차감항목) -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-----

담보가액 등의 구체적인 방법 등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)을 초과하는 금액. 다만,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.

가. ~ 자. (생략)

<신설>

-----.

가. ~ 자. (현행과 같음)

차. 「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」에 따라 지정된 금융투자업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취급한 대출금

(1) 영 제68조제2항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취급한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」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에 대한 대출금으로서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이내인 대출금

(2) 신용위험 유발거래 전후 신용위험을 적절히 평가·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체계 및 사후관리체계를 구축·운영할 것

(3) 내부통제체계 및 사후관리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·운영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당해 업무를

수행할 수 있는 조직을 운영할 것

(4) 제3-24조의2제2항에 따른 리스크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준수할 것. 다만, 제3-24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신용공여 총 합계액을 산정함에 있어 (1)에 따른 신용공여액은 제외한다.

4의2. ~ 9. (생략)

10. 상환우선주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. 다만,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은 제외하되, 그 규모는 순재산액의 50% 이내로 한다.

가.·나. (생략)

다.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일 것. 이 경우 잔존기간이 5년 미만인 되는 경우 상환우선주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에 다음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은 차감금액에서 제외하며, 잔존기간이 1년 미만인 되는 경우 전액을 차감한다.

4의2. ~ 9. (현행과 같음)

10.-----
-----.

---- 제3-12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가산액 및 제10의2호에 따라 차감에서 제외되는 금액과 합하여 순재산액의 -----.

가.·나. (현행과 같음)

다. -----
-----이고 5년 이내에 중도 상환되지 아니할 것.
---- 잔존기간(발행자가 중도 상환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잔존기간은 차기 중도상환권 행사가능일까지로 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이 5년 미만인 되는 경우 -----

(1) ~ (4) (생략)

<신설>

11. ~ 17. (생략)

제3-16조(주식위험액 산정) ① 제 3-15조제1호에 따른 주식위험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포지션을 대상으로 하여 산정한다.

1. ~ 4. (생략)

5.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으로 회계처리한 조건부자본증권

② ~ ⑥ (생략)

제3-23조(운영위험액 산정) ① 제 3-1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운영위험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.

1. 기준일 전전월말 이전의 최근 3년간 영업별 영업이익(1종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판매비와 관리비를

-----.

(1) ~ (4) (현행과 같음)

10의2. 자본증권 발행자금. 다만, 제 3-13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제외한다.

11. ~ 17. (현행과 같음)

제3-16조(주식위험액 산정) ① -----

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----- 지
분상품-----

②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3-23조(운영위험액 산정) ① -----

-----.

1. 기준일 -----

차감하지 않은 영업이익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연평균금액에 별표 9의 해당 위험값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계한 금액. 이 경우 최근 3년간 영업이익이 음수(-)인 경우는 0으로 본다.

2.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는 인가·등록업무단위에 따른 법정최소자기자본금액의 10%. 이 경우 영위하는 업무단위는 최근 1년간 실제 영위한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결정한다.

3. (생략)

② ~ ⑥ (생략)

제3-35조(긴급조치)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재무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어 정상적인 경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거나 영업의 지속시 투자자 보호나 증권시장(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) 및 파생상품시장의 안정이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-26조부터 제3-28조까

2. -----

하며,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단기금융업을 영위하는 경우 단기금융업에 대한 법정최소자기자본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한다.

3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3-35조(긴급조치) ① -----

지에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1. (생략)

2. 투자자예탁금 등의 인출 속도 등으로 인하여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투자예탁금 등의 지급불능 등의 사태에 이른 경우

3. (생략)

② (생략)

제3-66조(업무보고서 등의 제출) ① 영 제36조제3항제11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~ 9. (생략)

② 제3-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종 금융투자업자의 월별업무보고서에 계상되는 순자본비율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산, 부채, 자본은 개별 재무제표에 계상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.

③ ~ ⑩ (생략)

제4-38조(투자예탁금의 예외적 양도 등) ① 영 제72조제3호에서 “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”란 예치금융투자업자의 자금이체업무와 관련하여 금융통화위원회의 「지급결제제도 운영·관리규정」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

----- 투자자예탁금 -----

3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3-66조(업무보고서 등의 제출) ① -----

-----.

1. ~ 9.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③ ~ ⑩ (현행과 같음)

제4-38조(투자자예탁금의 예외적 양도 등) ① -----

과 “정상”으로 분류된 대출채권 중 콜론 및 조건부매수채권,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이나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지정하여 공정가치로 평가한 금융자산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 등을 0으로 할 수 있다.

② ~ ④ (생략)

제9-2조(위탁받은 업무의 처리내용 보고 주기 등) ①·② (생략)

<신설>

----- 당기손익-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이나 기타포괄손익-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-----

-----.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9-2조(위탁받은 업무의 처리내용 보고 주기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금융감독원장은 이 법, 「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인가·등록·승인 등(이하 이항에서 “인가등”이라 한다)의 심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각각의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(각각의 심사기간에서 제외하는 기간은 감안하지 아니한다)을 경과한 인가등의 심사 진행 상황 및 예상 심사 종료 시점을 금융위원회가 소집된 달에 마지막으로 개최되는 정례금융위원회에 매월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이 법 또는 「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」 또는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인가등의 심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

하다.

1. 법 제12조에 따른 인가(예비인가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): 인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
2. 법 제12조에 따른 인가(예비인가를 거친 경우): 인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
3. 법 제14조에 따른 예비인가: 인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
4. 법 제18조·제117조의4 또는 제249조의3에 따른 등록: 등록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
5. 법 제77조의2에 따른 지정: 지정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
6. 법 제360조에 따른 인가: 인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
7. 「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인가: 인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
8.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에 따른 대주주변경승인: 변경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
9.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인가등: 각각의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